

축산물의 표시기준  
(한국의 유제품 표시제도)  
황인진

국립수의과학검역원





# ‘축산물의 표시기준’ (한국의 유제품 표시제도)

2006.11.23

국립수의과학검역원  
축산물안전과  
황인진 사무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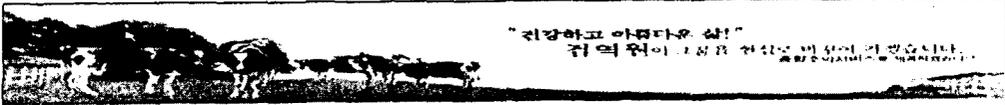
## ‘축산물의 표시기준’

-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으로
  -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로 운용
  - 축산물가공처리법 -

제6조(축산물의 표시기준)①농림부장관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.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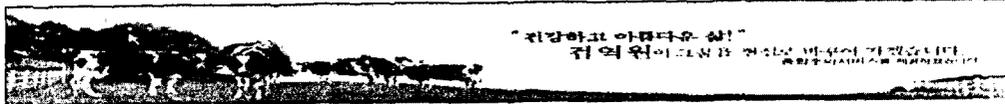




"건강하고 아름다운 삶!"  
 검역원이 크고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 
 국립수의과학검역원

## ‘축산물의 표시기준’ 개정 목적

- 국제기준과의 조화
- 국내 관련법령과의 조화
  - 식품위생법(식품등의 표시기준) 등
- 현행 고시 시행과정의 미비점 보완
- 위생적이고 원활한 가공 및 관리 도모
-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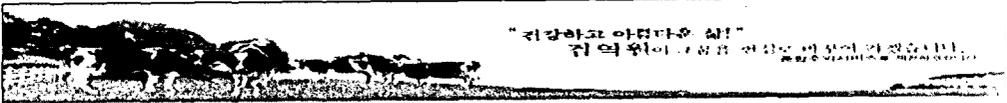


"건강하고 아름다운 삶!"  
 검역원이 크고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 
 국립수의과학검역원

## ‘축산물의 표시기준’ 개정연혁(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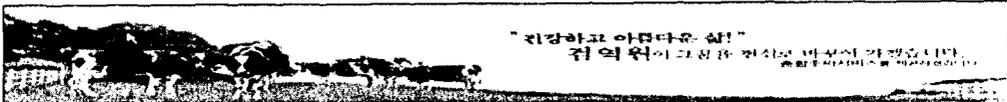
- ‘98.07.02 “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” 제정 (농림부고시 제1998-38호)
  -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이관 이후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 제정
- ‘00.03.25 “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” 제정 (검역원고시 제2000-3호)
  - 농림부에서 검역원으로 고시 이관
- ‘01.01.04 “축산물의 표시기준” 일부개정 (검역원고시 제2001-10호)
  - “주표시면”개념 도입
  - 축산물의 표시기준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
  - 영양성분의 표시대상 확대 신설





## ‘축산물의 표시기준’ 개정연혁(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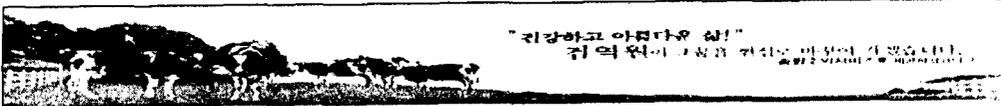
- ‘02.06.26 “축산물의 표시기준” 일부개정  
(검역원고시 제2002-5호)
  - 냉장육의 냉동유통시 안내표시문구 신설
- ‘04.01.20 “축산물의 표시기준” 일부개정  
(검역원고시 제2004-1호)
  -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함유하는 제품은 그 함유여부 표시
  - “모유가 아기에게 가장 좋은 식품입니다.”라는 내용의 안내표시를 도입



## ‘축산물의 표시기준’ 개정연혁(3)

- ‘04.08.04 “축산물의 표시기준” 일부개정  
(검역원고시 제2004-4호)
  - 식육포장처리업 신설관련 식육가공품에서 포장육을 분리하여 규정
- ‘05.09.23 “축산물의 표시기준” 일부개정  
(검역원고시 제2005-10호)
  - 모든 원재료명 및 성분명 표시(복합원재료 개념 도입)
  - 다소비 축산식품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
  - 축산물가공품중 원재료의 함량표시 범위 확대  
(주표시면에 표시 포함)
  - 포장육, 수입식육의 식육 종류 및 부위명 표시 의무화
  - 식용란의 권장표시기준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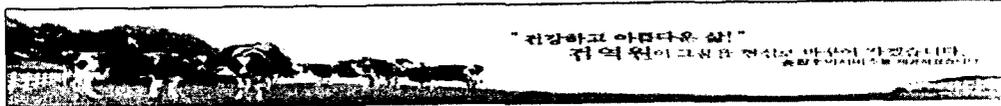




"건강하고 아름다운 삶!"  
국민수익과 안전을 위하여 노력합니다.  
국립수의과학검역원

## ‘축산물의 표시기준’의 목적

- 축산물의 위생적이고 원활한 가공 및 관리 도모
-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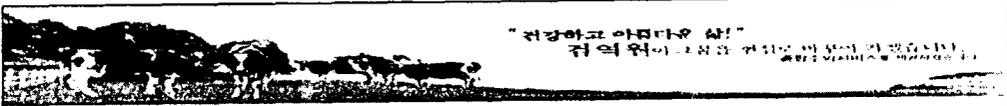
"건강하고 아름다운 삶!"  
국민수익과 안전을 위하여 노력합니다.  
국립수의과학검역원

## ‘축산물의 표시기준’ 적용대상(1)

### 1. 축산물가공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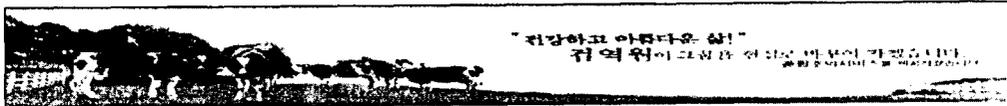
- 가.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제조하는 축산물가공품
- 나.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축산물(수입축산물)중 축산물가공품





## ‘축산물의 표시기준’ 적용대상(2)

2. 1호외의 그릇 또는 포장에 들어진 축산물 중 수입축산물
3.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만드는 포장육
4.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그릇 또는 용기에 포장한 식용란으로서 동고시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용란



## 축산물의 표시사항

1. 제품명
2. 축산물가공품의 유형
3. 영업자의 명칭(상호) 소재지
4. 제조연월일
5. 유통기한
6. 내용량
7. 원재료명 및 함량
8. 성분명 및 함량
9. 영양성분
10. 기타 별표 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에서 규정하는 사항



"건강하고 아름다운 삶!"  
지역원이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.

## 축산물의 표시사항

2. 축산물가공품의 유형

**일괄표시면**

6. 내용량

7. 원재료명 및 함량/8. 성분명 및 함량

9. 영양성분

4. 제조연월일/ 5. 유통기한

주표시면

1. 제품명

HACCP 마크

3. 영업장의 명칭·소재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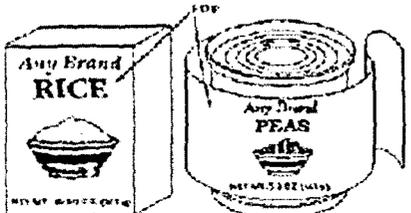


※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  
 ※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·각인 또는 소인으로 표시(불가능한 경우 스티커 사용)

**국립수의과학검역원**  
NATIONAL VETERINARY, RESERCH & QUARANTINE SERVICE

"건강하고 아름다운 삶!"  
지역원이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.

## 주표시면



“주표시면”이라 함은 용기·포장의 표  
시면중 제품명 등이 인쇄되어 소비  
자가 축산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  
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

○ 주표시면에 표시되어야 하는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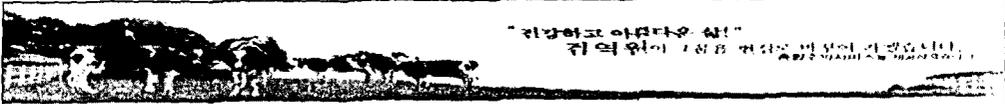
- 제품명, 축산물가공품의 유형, 내용량 - 12포인트이상
- ※ 제품명이 22포인트 이하인 경우 유형과 내용량은 7포인트 이상

참고 : 주표시면의 면적 계산 (미국)

- 직육면체 : 전면의 가로 × 세로
- 원통형 : 원통둘레 × 높이 × 40%

**국립수의과학검역원**  
NATIONAL VETERINARY, RESERCH & QUARANTINE SERVIC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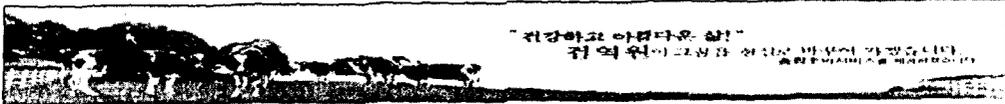




"건강하고 아름다운 삶!"  
김영원이 건강한 원료를 바탕으로 가공합니다.  
출판물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.

## 제품명

- 허가(신고) 관청에 신고 또는 보고하는 명칭
- 상호 로고 또는 상표이외의 표현이나 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및 다른 유형의 축산물가공품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은 불가
-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시 함량을 주표시면이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란에 12포인트이상의 활자로 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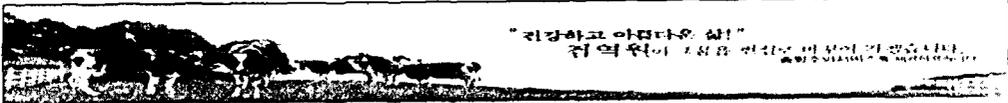


"건강하고 아름다운 삶!"  
김영원이 건강한 원료를 바탕으로 가공합니다.  
출판물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.

## 축산물가공품의 유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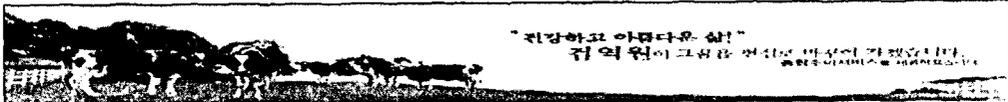
-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한 유형
- 제품명이나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에 생략가능
- 포장육 및 수입하는 식육은 식육의 종류와 부위명 표시
  - 2가지 이상의 부위가 포함되는 경우 용도 등으로 표시가능
  - 제품명이나 제품명의 일부로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 사용시 생략가능





## 영업장의 명칭(상호)·소재지

- 식육포장처리업, 축산물가공업
  - 영업 허가시 허가관청에 제출한 명칭, 소재지
  - 소재지는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 표시 가능
- 축산물수입판매업
  -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장의 명칭
  - 당해 영업장의 명칭, 소재지
- 상기 외의 판매업소 등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
  - 상기 영업장 명칭의 활자크기와 같거나 작은 크기로 표시



## 제조연월일

- 제조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(선택사항)

제조일 표시

〇〇년〇〇월〇〇일, 〇〇.〇〇.〇〇,

〇〇〇〇년〇〇월〇〇일, 〇〇〇〇.〇〇.〇〇

유통기한 3개월 이내(자동화설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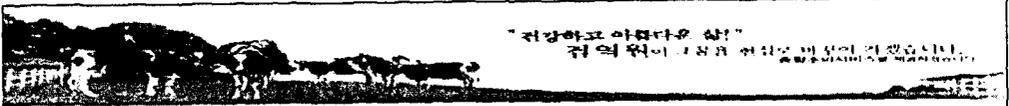
〇〇월 〇〇일, 〇〇.〇〇, 〇〇월 〇〇일 〇〇시 또는

〇〇.〇〇.〇〇:〇〇

통조림제품에 있어서 연도의 표시는 끝 숫자만을, 10월 11월 12월의 월 표시는 각각 O, N, D로 표시

축산물의 포장이 완료된 때 즉시 표시





## 유통기한

의무사항(현재 아이스크림류 제외)

제조일 표시하지 않는 경우

유통기한 표시

- 〇〇년〇〇월〇〇일까지, 〇〇.〇〇.〇〇까지,
- 〇〇〇〇년〇〇월〇〇일까지, 〇〇〇〇.〇〇.〇〇까지

유통기한 3개월 이내(자동화설비)

- 〇〇월〇〇일까지, 〇〇.〇〇까지
- 〇〇월〇〇일〇〇시까지, 〇〇.〇〇. 〇〇 : 〇〇 시까지

제조일 표시하는 경우

제조일부터 〇〇일까지, 제조일부터 〇〇월까지, 제조일부터 〇〇년까지  
 사용·보존에 필요한 조건 표시 예) 「냉동보관」 냉장보관, 냉동냉장은  
 도

여러가지 제품을 함께 포장시 그 중 가장 짧은 유통기한 표시

일괄장소에 표기가 곤란한 경우 : 유통기한 표시위치 명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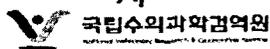


## 내용량

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 용량 또는 갯수로 표시

- 고체 또는 반고체 : 중량
- 액체 : 용량
- 고체와 액체의 혼합물: 중량 또는 용량
- ※ 개수 표시 : 중량 또는 용량을 괄호안에 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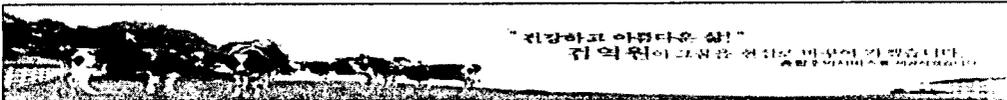
먹기전에 버리게 되는 액체와 함께 포장되는 축산  
 물가공품은 액체를 뺀 축산물가공품의 중량을 표  
 시





## 원재료명, 성분명 및 함량

- 모든 원재료 또는 성분 표시(정제수 제외)
  - 주원료, 복합원재료 표시
  - 분류명칭 표시
  -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표시
  - 원재료 또는 성분 함량 표시
  -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일부로 사용한 경우
  - 원재료명 표시란을 제외하고 주표시면에서 특정 원재료명 및 성분명을 표시하는 경우
  - 식품첨가물 명칭·용도: 식품표시기준 준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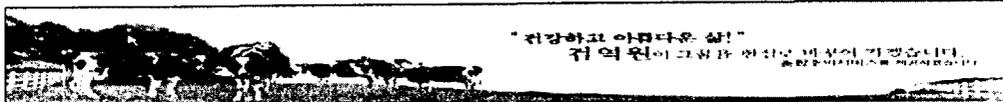
## 영양성분 표시

- 표시대상
  - 유가공품: 조제유류, 우유류, 발효유류, 가공유류, 아이스크림류, 분유류
  - 식육가공품: 소시지
  - 자발적 표시: 영양성분, 영양강조 표시
- 면제대상
  -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제품
  - 주표시면이 30cm<sup>2</sup>이하인 제품
- 표시방법
  - 성분 표시방법 : 영양소 명칭, 함량, 영양소기준치 비율
  - 강조 표시방법(저, 무, 고, 함유 등)



## 영양성분 표시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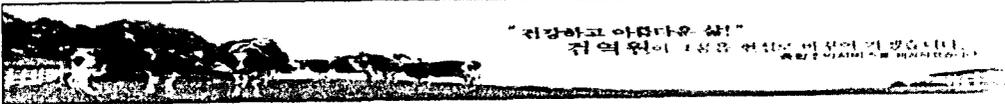
표시 단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제품이 판매되는 시점에서의 100 g, 100ml</li> <li>• 1회분량 포장인 경우, 1회포장당</li> <li>• 제공횟수를 표시한 경우 1인분량당, 1회분량당</li> <li>• 조제분유: 먹이는 방법에 따라 조유했을때의 100ml당 표시 가능</li> </ul>
필수 VS 임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필수표시 : 열량,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, 나트륨</li> <li>• 임의표시 :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비타민 및 무기질</li> <li>※ 조제유류 이외의 제품은 비타민A, D, E, C, B1, B2, 나이아신, B6, 엷산, 칼슘, 인, 철, 아연에 한함</li> <li>- 식이섬유, 콜레스테롤, 당류, 지방산류, 아미노산류</li> </ul> </li> </ul>
표시 내용	영양소의 명칭, 함량, 영양소기준치에대한 비율[%]



## 영양강조 표시방법(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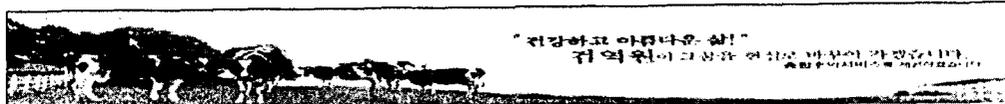
- “저”, “무”, “고(또는 풍부)”, “함유(또는 급원)”
  - 무 또는 저: 제조·가공과정을 통하여 해당 영양소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한 경우에만 가능
  - 원래 무 또는 저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동종의 다른 제품도 무 또는 저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표시를 해야 무 또는 저의 표시 가능
  - <영양소함량기준치표> 참고





## 영양강조 표시방법(2)

- “덜”, “더”, “감소 또는 라이트”, “강화”, “첨가”
  - 영양소 함량 차이를 다른 제품의 표준값과 비교하여 절대값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
    - 다른 제품의 표준값 산출은 시장 점유율이 높은 3개 영업소 이상의 동일제품을 대상으로 산출
  - 다른 제품의 표준값과의 차이
    - 열량 및 대량영양소 : 최소 25%이상
    - 미량영양소 : 최소 1일 권장량의 10%이상
    - 함량차이의 절대값은 “덜, 라이트, 감소”의 경우 “저”의 기준치보다 커야 하며, “더, 강화, 첨가”의 경우 “함유”의 기준값보다 커야 함



## 영양표시 서식도안

[도 1] 영양표시서식도안

(예시 1)

영양성분	
단백질 (g/100g)	12%
지방 (g/100g)	3%
탄수화물 (g/100g)	12%
섬유질 (g/100g)	2%
칼슘 (mg/100g)	2%
인 (mg/100g)	2%

(예시 2)

영양성분	
단백질 (g/100g)	12%
지방 (g/100g)	3%
탄수화물 (g/100g)	12%
섬유질 (g/100g)	2%
칼슘 (mg/100g)	2%
인 (mg/100g)	2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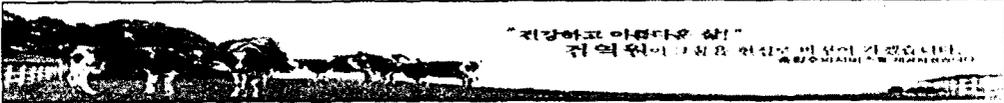
(예시 3)

영양성분	표준값 (g/100g)		비교대상 (g/100g)	
	1	2	3	4
단백질	0%	0%	0%	0%
탄수화물	0%	0%	0%	0%
지방	0%	0%	0%	0%

(예시 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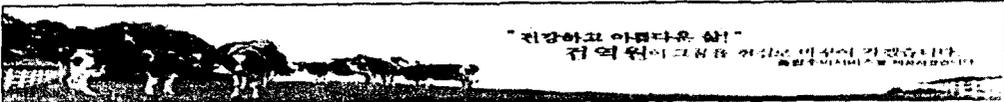
영양성분	
단백질 (g/100g)	12%
지방 (g/100g)	3%
탄수화물 (g/100g)	12%
섬유질 (g/100g)	2%
칼슘 (mg/100g)	2%
인 (mg/100g)	2%





## '05년 개정 내용

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5-10호



## 주요 개정('05.9.23)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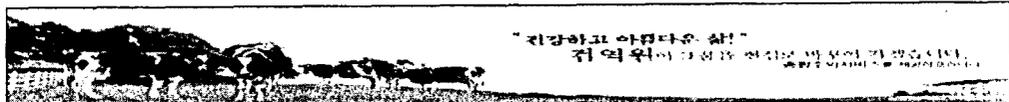
- 축산물가공품의 원재료 표시개선
- 축산물가공품중 원재료 함량표시 확대
- 축산물가공품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
- 포장육, 식육가공품 등의 표시 개선
- 조사처리 축산물에 대한 표시 강화
- 식용란에 대한 권장 표시기준 마련
- 축산물가공품별 표시기준 개정





## 축산물가공품의 원재료 표시개선

- 기존에는 원재료로 사용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을 표시할 수 있었으나
- 정제수를 제외하고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 또는 성분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함



## 모든 원재료 표시

개정전	개정후
•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의 성분 또는 원재료명을 표시	•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 또는 성분은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
예시) 원재료: 닭고기, 돼지고기, 녹말, 소금, 콘시럽, 아질산염[발색제],	예시) 원재료: 닭고기, 돼지고기, 녹말, 소금, 콘시럽, 파프리카, 스모크향, 설탕, 아질산염[발색제]

※ 예외

- 주표시면의 면적이 30 cm<sup>2</sup> 이하 → 5가지이상의 원재료명
- 복합원재료 → 팔호안에 표시
- 총중량비율이 2%미만인 원재료 → 사용순서에 관계없이 표시
- 분류명칭으로 표시





건강하고 아름다운 삶!  
집의원이 그걸을 원하시면 바꾸어 드립니다.  
국립수의과학검역원

## 복합원재료의 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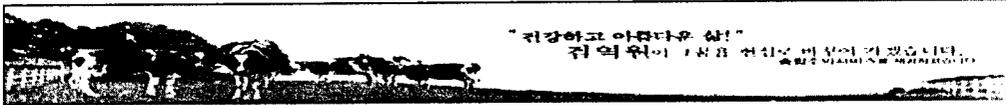
“복합원재료”라 함은 그 자체가 2가지 이상의 원재료  
로 제조·가공되어 축산물에 사용되는 원재료

복합원재료명의 명칭뒤에 괄호를 하고 그안에 정제수  
를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5가지 이상의  
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할 수 있음

총중량비율이 5%미만인 복합원재료는 복합원재료의  
명칭만 표시 할 수 있음

복합원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복합원재료는 명칭만을  
표시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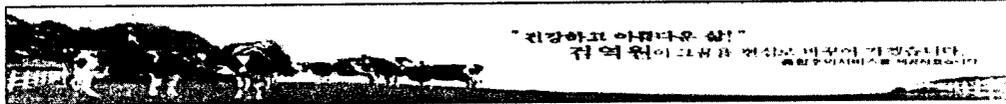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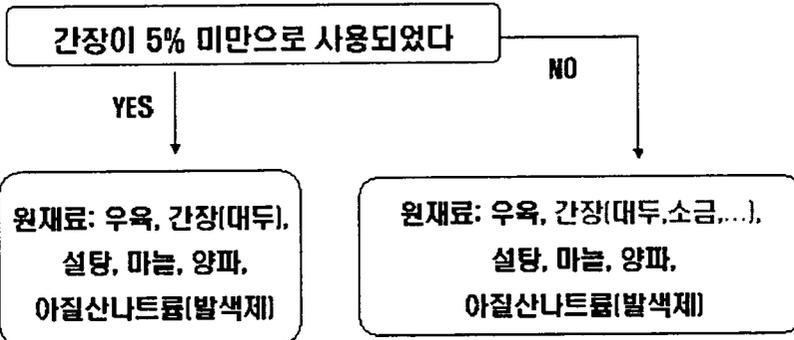
국립수의과학검역원  
National Veterinary Research & Quarantine Service



## 복합원재료의 표시

제품유형: 건조저장육류

원재료: 우육, 물, 간장, 설탕, 마늘, 양파, 아질산나트륨



## 축산물가공품중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및 함량표시 확대

-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함께 그 함량(백분율 또는 중량)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는
  - 제품의 제조·가공시에 사용한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때
  - 원재료명 표시란을 제외하고 주표시면에서 특정 원재료명 및 성분명을 표시한 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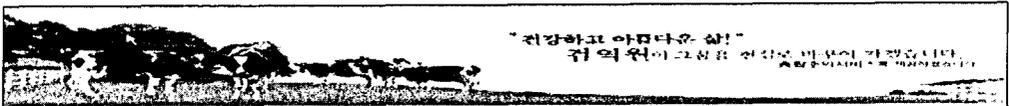


"건강하고 아름다운 삶!"  
 권역원이 그칠수 없습니다. 국립수의과학검역원



국립수의과학검역원  
 국립수의과학검역원 / 중량 : 240g

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
NATIONAL VETERINARY RESEARCH & QUARANTINE SERVIC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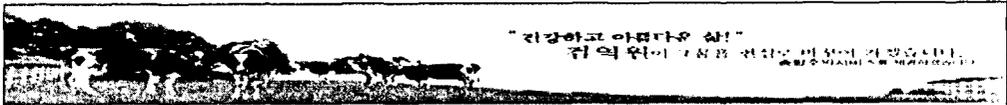


"건강하고 아름다운 삶!"  
 권역원이 그칠수 없습니다. 국립수의과학검역원

## 축산물가공품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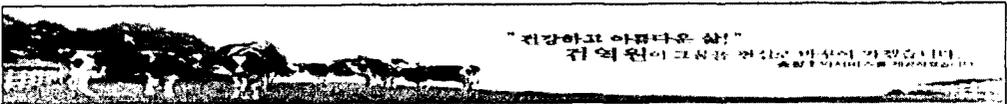
- 축산물 중 국민 다소비 식품(조제유류, 우유류, 발효유류, 가공유류, 아이스크림류, 분유류, 소시지류)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함
  - 그러나,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제품과 주표시면이 30cm<sup>2</sup>이하인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를 생략 가능
-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 축산물이 아니라도 영양성분, 영양강조 표시를 하고자 하는 축산물은 '축산물의표시기준'에서 정하는 표시방법대로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함

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
NATIONAL VETERINARY RESEARCH & QUARANTINE SERVICE



## 영양성분의 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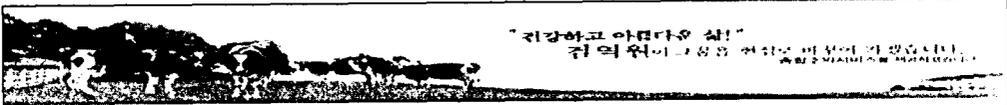
개정전	개정후
조제유류	조제유류, 우유류, 발효유류, 가공유류, 아이스크림류, 분유류, 소시지류
영양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축산물가공품	左同
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제품	左同
	영양성분표시가 면제되는 제품: 1)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제품 2) 주표시면이 30cm <sup>2</sup> 이하인 제품



## 포장육, 식육가공품 등의 표시 개선(1)

- 포장육 및 수입하는 식육은 식육의 종류 (예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 등)와 부위명(안심, 목심, 앞다리 등)을 표시하여야 함
  - 다만, 20이상의 부위가 포함되어 있는 등 부위명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용도 등으로 표시가능
  - 제품명이나 제품명의 일부로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을 사용한 때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음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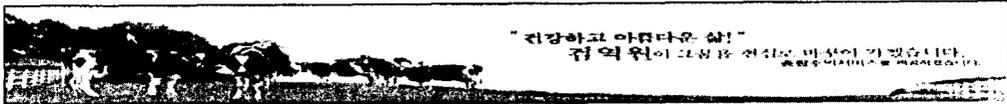
개정전		개정후
포장육		식육의 종류와 부위명을 표시
수입식육	-	

**예) 쇠고기 등심, 돼지고기 삼겹살, 닭 날개**

20이상의 부위가 포함되어 부위명의 표시가 어려운 경우 용도로 표시  
 “식육의부위별·등급별및종류별구분방법(농림부고시)” 준용

**예) 소고기 국거리용, 돼지고기 카레용, 닭고기 컷틀릿용**

※ 제품명에서 식육의 종류 및 부위명을 표시한 경우 생략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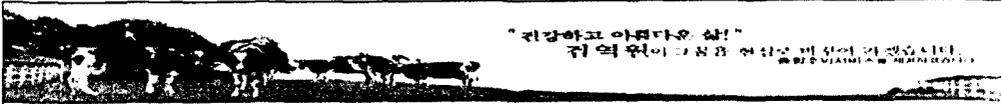


## 포장육, 식육가공품 등의 표시 개선(2)

-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의 경우 2가지 이상의 식육의 종류 및 부위를 사용하는 제품은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원료 식육의 종류 및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

○ 이 경우 제품명으로 사용한 식육의 종류 및 부위명에 대한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





"건강하고 아름다운 삶!"  
 국립수역과와 함께 원산지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!  
 국립수역과와 함께 원산지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!

개정전	개정후
<p>2가지이상의 원료식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료식육 일부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원료식육의 함량을 제품명과 동일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	<p>2가지 이상의 식육의 종류 및 부위를 사용하는 제품은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원료 식육의 종류 및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품명으로 사용한 식육의 종류 및 부위명에 대한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.</p>

**상대적으로 적게 함유된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만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없음**



"건강하고 아름다운 삶!"  
 국립수역과와 함께 원산지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!  
 국립수역과와 함께 원산지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!

## 조사처리 축산물에 대한 표시 강화

- 조사처리 축산물의 경우 조사도안은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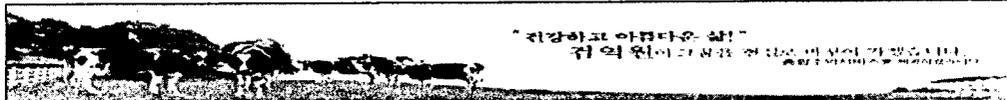


- 조사처리된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재료란에 “조사처리된 ○○○”으로 표시하여야 함





개정전	개정후
<p>조사처리 축산물의 경우에는 조사처리업소명, 전화번호, 조사년월일, 조사선량, 조사처리된 축산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직경 5센티미터이상의 조사도안을 표시하여야 한다.</p>	<p>조사처리 축산물의 경우에는 조사처리업소명, 전화번호, 조사년월일, 조사선량, 조사처리된 축산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조사도안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표시면에 표시 하여야 하며, 조사처리된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원재료명 표시란에 “조사처리된 ○○○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.</p>



## 식용란에 대한 권장 표시기준 마련

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Guideline을 설정

표시사항

제품명

생산농장(또는 포장시설)의 명칭 및 소재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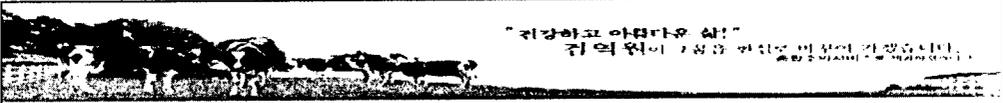
유통기한 : 산란일 또는 포장일로부터의 유통기한

내용량 : 식용란의 총중량과 개수

영양성분 : 축산물가공품의 표시기준 준용

기타표시사항: “구입후 냉장보관하시기 바랍니다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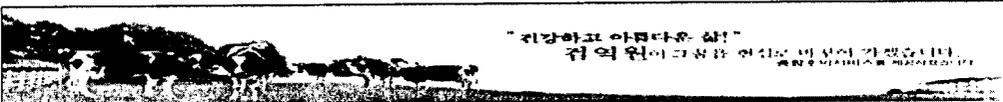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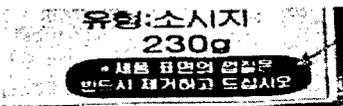
## 식육가공품의 개별표시 기준 개정

개정전	개정후
비가열 식육가공품은 “비가열제품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.	비가열 식육가공품은 “비가열제품”으로 표시하여야 하며, 조리 또는 가열처리를 요하는 제품은 조리 또는 가열처리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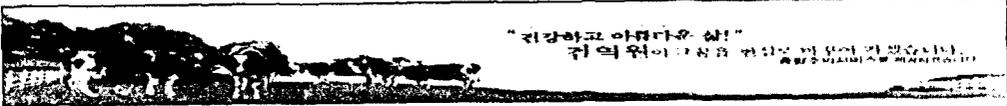
안전한 소비를 위한 정보제공



## 식육가공품의 개별표시 기준 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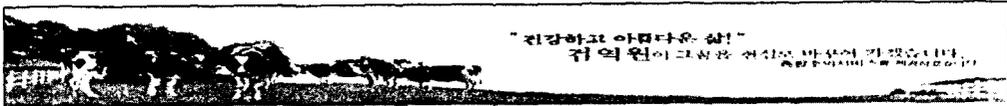
개정전	개정후
-	(가)중전에 사용된 케이싱의 명칭은 원재료명 표시란의 마지막에 표시할 수 있으며, 비가식 케이싱을 사용한 경우에는 주표시면에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비가식 케이싱의 사용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. 

안전한 소비를 위한 정보제공



## 유가공품의 개별표시 기준 개정

개정전	개정후
	<p>• 발효후 가열처리된 제품에는 “발효후 가열처리 제품”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(발효유분말)</p> <p>• 기타조제분유 및 기타조제우유는 다음 영양소에 대하여 영양성분표시를 하여야 한다.</p> <p>조단백질, 조지방, 비타민 A, 비타민 D, 비타민 C, 비타민 B<sub>1</sub>, 비타민 B<sub>2</sub>, 니코틴산, 비타민 B<sub>6</sub>, 엽산, 판토텐산, 비타민 B<sub>12</sub>, 비타민 K<sub>1</sub>, 비타민 E, 나트륨, 칼륨, 염소, 칼슘, 인, 마그네슘, 철, 요오드, 구리, 아연, 망간</p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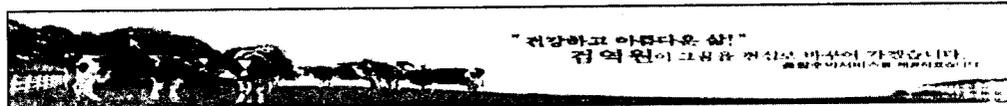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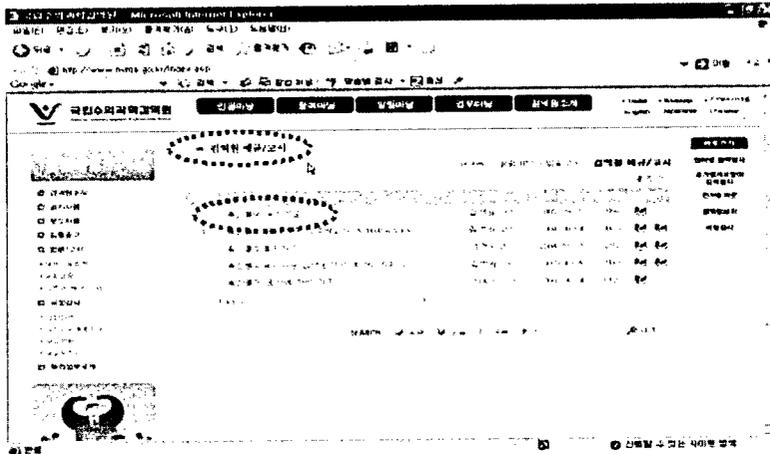
## 개정사항의 시행시기

- '05.9.23(고시일)부터 시행
- 모든 원재료 표시(〔별표1〕1.가.(8)(가))  
영양성분 의무표시(〔별표1〕1.가.(10)(가)1)및2))  
 ⇒ '07. 1.1부터
- 고시 시행일 이전 허가 또는 신고 영업자  
 ⇒ '06.10.2부터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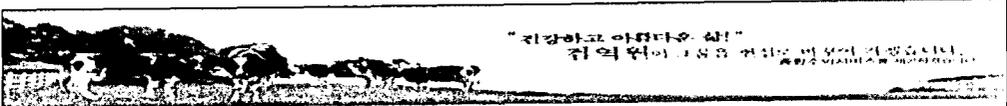
## 축산물의표시기준 전문은 어디에서?



## '06년 개정추진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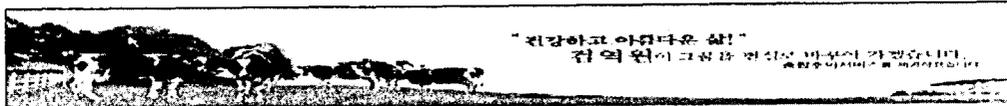
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공고 제2006-155호





## ‘축산물의표시기준’ 개정(안) 주요 내용(1)

- 식육의 종류와 부위명 표시 등 개선
  - 포장육 및 수입하는 식육 이외에도 양념육에서도 식육의 종류 및 부위명 표시 의무화
- 아이스크림 제조일 표시 의무화
- 내용량 표시 개선
- 조제유류 남은량 처리방법에 대한 권고문 신설
  - 영유아에서 뇌수막염 유발 등으로 최근 문제시 되는 *E. sakazakii* 등 미생물 증식에 의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권고 문구 표시 의무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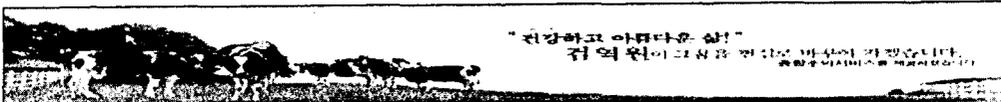
## ‘축산물의표시기준’ 개정(안) 주요 내용(2)

-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에 있어 식육의 종류 및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경우의 표시기준 명확화
  - 제품명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의무 조항 강조
- 우유류의 살균 또는 멸균온도 및 시간 표시 의무화
  - “살균제품” 또는 “멸균제품” 구분표시 이외에 온도 및 열처리시간 표시 의무화
- 자연치즈의 유형표시 방법 개선
  - “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(검역원고시)” 개정(‘06.4.3)
- 유산균함유 아이스크림류의 유산균수 표시 의무화
- 영양성분 표시 방법 개선
  - ‘식품등의표시기준’ 개정(안) 사항 반영



## 개정 추진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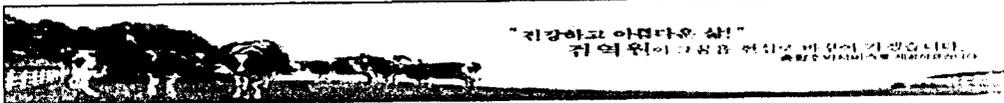
- 개정(안) 마련을 위한 원내협의회(7.20)
- 농림부, 시도, 생산자, 소비자 등 유관기관 협의회 (7.28)
- 표시광고 자문위원회 개최(9.8)
- 입안예고(9.28)
- WTO SPS/TBT 통보(통보후 60일간)
- 표시기준 분과위원회 개최(12월)
- 법제, 규제심사(12월)
- ‘축산물의표시기준’ 일부 개정 고시(12월)



## 식육의 종류와 부위명 표시 등 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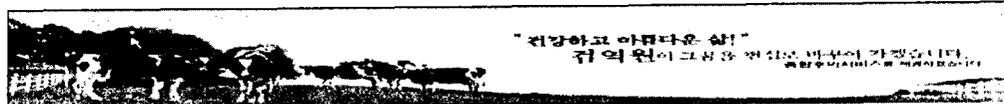
- 검토배경
  - 현재는 포장육과 수입식육에만 표시 의무
  - 양념육은 ‘식육에 식염, 조미료, 향신료 등으로 양념한 것 (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상)
  - 가짜 이동갈비 사건(갈비덧살?)
  - 식육의 종류 표시 의무관련 식품위생법 개정(07.1.1.시행)
    - 일반음식점 영업자(면적 300㎡이상)가 생육 또는 양념육을 주재료로 하여 조리, 판매하는 구이용 쇠고기
- 개정(안): 공고문 참고
  - ‘포장육, 양념육류(양념육) 및 수입하는 식육은 식육의 종류와 부위명을 표시하여야 하며, ~’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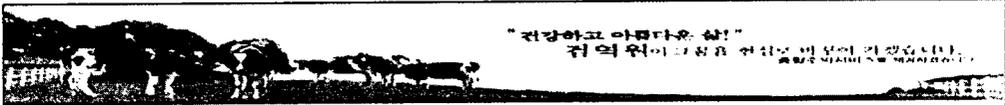
## 아이스크림 제조일 표시 의무화

- 검토배경
  - 현재 '제조일' 표시는 임의규정임
  - 현 규정상 아이스크림은 제조일 및 유통기한 표시 생략 가능
    - 냉동(-18℃이하)상태로 보존, 유통
    - 국제기준 등 반영
  - 소비자 알권리 확대를 위한 표시 요구 증대
- 개정(안): 공고문 참고
  - 제조'연월'만 표시가능, 최소유통단위별, 날개 제품 재포장한 경우 재포장한 포장지에 표시



## 내용량 표시 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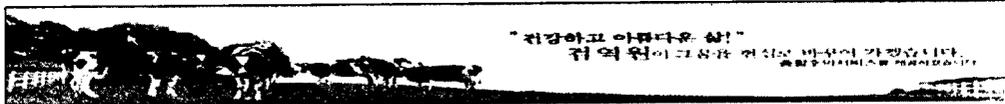
- 검토 배경
  - 포장육 및 수입식육 등 일정량으로 제품화 하기 어려운 경우, 내용량 표시를 별도로 가능토록 함
- 개정(안): 공고문 참고
  - 내용량을 주표시 장소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표시위치를 명기토록 함



## 영양성분 표시 정비

‘식품등의표시기준’ 개정사항(06.9.8) 반영

- 당류, 포화지방, 트랜스지방, 콜레스테롤 함량 표시의무화
- 나트륨, 비타민 C 기준치 조정
  - 나트륨: 3,500mg⇒2,000mg(하향조정)
  - 비타민 C: 55mg ⇒100mg(상향조정)
- 영양성분 표시서식 도안 및 표시방법 개선
-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업데이트(2005년 기준)



## 조제유류 수유후 남은양 처리방법 권고문 신설

- 검토배경
  - 최근 *E.sakazaki*가 조제분유 등을 매개로 영유아에 수막염 등 유발 가능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대
  - 수유 후 남은 조제분유의 처리방법에 대한 권고문을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 교육을 통한 *E.sakazaki* 등 미생물 증식으로 인한 위해저감을 도모코자 함
- 개정(안): 공고문 참고
  - ‘조유후 바로 수유하시고 남은량은 재수유하지 말고 버리십시오’라는 내용의 안내문구 표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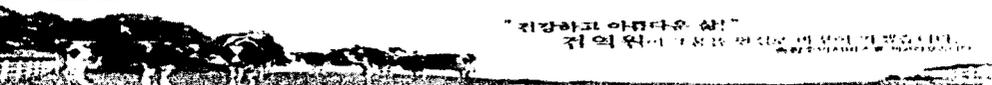


"건강하고 아름다운 삶!"  
국립수의과학검역원

## 식육의 종류 및 부위명의 제품명 사용 표시조건 명확화

- 검토배경
  - 현재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에서 2가지 이상의 식육의 종류 및 부위를 사용하는 제품은
    -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
    - 원료 식육의 종류 및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
  - 이를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이해하는 등 조문 해석에 혼선이 있어 이를 명확히 보완하기 위함
- 개정(안): 공고문 참고
  - 제품명으로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르고 그 함량을 표시

 국립수의과학검역원



"건강하고 아름다운 삶!"  
국립수의과학검역원

## 유가공품 개별 표시기준 일부 개정(1)

### 1. 우유류의 살균온도 또는 멸균온도 및 시간 표시 의무화

- 검토배경
  - 현재 우유류의 경우 가열처리방법에 따라 “살균제품” 또는 “멸균제품”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
  - 살균온도 및 시간을 표시하도록 하나 멸균온도 표시에 대하여는 누락됨
  - 같은 우유류 중 ‘저지방우유류’, ‘유당분해우유’, ‘가공우유’, ‘산양유’와 상충
- 개정(안):공고문 참고
  - 살균온도 또는 멸균온도 및 시간을 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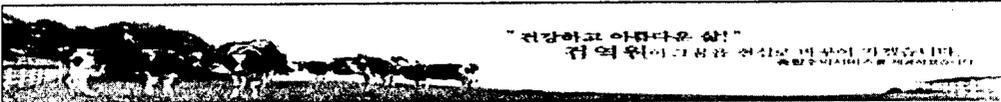
 국립수의과학검역원



## 유가공품 개별 표시기준 일부 개정(2)

### 2. 자연치즈의 유형 표시 방법 개정

- 검토배경
  - 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” 개정(’06.4.3)으로 자연치즈의 유형 중 지방형을 삭제
  - 축산물가공품의 유형표시에 반영
- 개정(안): 공고문 참고
  - 유형에 따라 경성치즈, 반경성치즈, 연성치즈, 생치즈로 표시



## 유가공품 개별 표시기준 일부 개정(3)

### 3. 유산균함유 아이스크림류의 유산균수 표시 의무화

- 검토배경
  - 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” 상 유산균함유 아이스크림류의 경우 유산균수의 기준을 ‘표시량이상’으로 하고 있으나,
  - 현행 표시기준상 유산균수 표시 의무를 두고 있지 않아 기준규격 적용상에 어려움이 있음
- 개정(안): 공고문 참고
  - 유산균함유제품과 발효유함유제품은 유산균수 표시
  - 특정균의 함유사실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균의 종류와 함유균수표시



“리강하고 아름다운 삶”  
김익원이 말씀하신 뜻을 이 땅에 전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

국립수자원연구원  
NATIONAL INSTITUTE OF WATER RESOURCES